

경운대학교 입학사정관윤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신입생 지원자를 평가를 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, 입학사정관의 독립성 확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칙 및 기준) ① 입학사정관은 평가자로서의 윤리성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사정관은 평가과정에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③ 입학사정관은 내·외부로 부터의 그 어떠한 부당한 개입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타협을 거부하고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④ 입학사정관은 내·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입학사정관은 경운대학교 입학사정관제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독립성) 입학사정관제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며, 입학사정관 제도에 규정된 평가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그 어떤 외부로 부터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.

제4조(위반에 대한 조치) 입학사정관이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기준, 독립성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

① 전임사정관과 내부위촉사정관은 경운대학교 교·직원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외부 위촉 사정관의 경우 즉시 입학사정관직을 해임한다. 다만, 해당사정관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독립성을 해하거나 평가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